

#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안전인증의 표시는 제품과 포장에 둘 다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과 포장 중에 선택하여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9조(안전인증의 표시등·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등)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 운용요령 별표6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포장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전동기제품에 들어가는 3kw 이하는 접지볼트가 신주볼트를 사용해야 한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A** 신주볼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K60335-1의 27항(접지관련)과 28항(나사관련)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지접속을 하는 부분은 충분한 내부식성을 가져야 하고, 그 부분이 강철로 되어 있는 경우 중요부분은 두께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전기도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재질은 (주1) 동 또는 동합금인 부분으로서 저온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58% 이상, 기타 부분에는 50% 이상의 동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 및 13% 이상의 크롬을 함유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 부분은 내식성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주2) 크롬산염가공 코팅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통상 부식방지 대책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간주하지 않으나, 접촉압력을 가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주3) 접지접속을 하는 부분 및 접촉압력을 가하거나 전달 하도록만 하는 부분의 예로서는 그림10(K60335-1)을 참조 할 것. (주4) 강철 부분에서는 특히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중요부분이 된다. 중요부분이 타당한지의 조사에는 그 부분의 형상에 따른 코팅의 두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ISO 2178 또는 ISO 1463에 따라 코팅두께를 측정한다.

**Q**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취득한 신제품(복사기를 기반으로 프린터, 팩스, 스캐너를 구현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절차 없이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해당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면 공장심사 절차 및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복사기(또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인 프린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품목인 팩시밀리 기능이 추가되어 '12.7.1일 이전에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정기심사 등 일체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기용품 표시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유아용 범퍼침대는 천으로 만든 침대이며, 침대라기보다는 쿠션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안전검사 품목인가요?

**A** 유아용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유아용침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높이가 낮은 사각의 테두리 쿠션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넘어짐, 질식, 목접힘 등의 위해 우려가 예상되므로 유아용침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바닥재와 사각의 테두리를 함께 판매할 경우 유아의 위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로 인하여 유아용 침대 형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유아의 위해우려가 높아 함께 판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제품은 바닥침구류만 별도로 분리하여 상기법에 따른 유아용 섬유제품인 침구류로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여성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여성의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동제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 4.유해물질의 안전요건과 별표1의 안전·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자체 또는 외부시험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외국의 시험성적서 자료, 원단공급업체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자료 등을 확인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적 KC마크를 부착하여 국내 유통할 수 있습니다. KC마크의 부착은 의무사항이나 부착방법은 업체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Q** 가족구두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하나씩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나요?

**A** 가족구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인 가족제품에 해당됩니다. 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해당공산품의 출고전이나 통관 전에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의 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KC마크 및 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를 인터넷에서 주문받아 한 개씩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KC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